

(2022.09.08.)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휘경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휘경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내용을 일반인에게 공람합니다.

2. 휘경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(☎ 02-2127-4590) 또는 휘경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(☎ 02-2245-7223)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9월 29일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

가. 공람기간 : 2022.09.29. ~ 2022.10.13.(14일간)

나. 공람장소 :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 (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),
휘경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(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 122-1) 거부빌딩6층

다.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신청내용

- 1) 사업명칭 : 휘경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- 2) 시행위치 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172번지 일대
- 3) 시행면적 : 64,326㎡

4) 시행기간

구분	사업 시행 기간	비고
변경 전	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	
변경 후	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20개월	증) 60개월

5) 정비사업비

구분	정비사업비	비고
변경 전	515,751,043,419원	
변경 후	541,742,583,000원	증) 25,991,539,581원

※ 동대문구고시 제2022-156호(2022.09.08.)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된 정비사업비로 변경

6) 관계도서 : 생략(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와 같습니다).

라. 기타사항 : 본 사업시행계획(변경)은 공람기간 중 접수된 의견, 관계법령 검토 및 관련기관(부서)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끝.